

# 원화환산납입특약

##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제 1조 [특약의 체결 및 효력]

## 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)

제2조 [특약의 보험료 납입]

## 제3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

제3조 [보험계약의 기준통화]

제4조 [환산기준일]

제5조 [원화환산율]

제6조 [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]

## 제4관 기타사항

제7조 [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]

## 원화환산납입특약

###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#### 제 1조 [특약의 체결 및 효력]

-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(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“주계약”, 보험계약자는 “계약자”, 보험회사는 “회사”라 합니다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

#### 용어해설

##### [보장개시일]

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.

### 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)

#### 제2조 [특약의 보험료 납입]

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.

### 제3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

#### 제3조 [보험계약의 기준통화]

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제2회 이후 보험료 등 주계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(이하“원화”라 합니다)로 합니다.

#### 제4조 [환산기준일]

- ①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(이하 “환산기준일”이라 합니다)이라 합니다.
- ② 환산기준일은 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의 직전 일 영업일로 합니다.
- ③ 제2항의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(이하 “주거래 은행”이라 합니다)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로 합니다.



## 용어해설

### [영업일]

“토요일”, “일요일”,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” 및 “근로자의 날”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.

### 제5조 [원화환산율]

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(최종고시환율)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.

### 제6조 [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]

회사는 이 특약의 약관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
## 제4관 기타사항

### 제7조 [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